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신상의 장애’ 표현 수정 〉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57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심신상의 장애’ 표현 수정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최보운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4. 30.
3. 회 부 일: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심신상의 장애’ 표현 수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심신상의 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생략)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다.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의 직권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심신상

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임.

- 그런데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심신상의 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에 따라 ‘심신’(‘心身’-정신과 신체, ‘心神’-정신)을 해석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 여부는 입법 취지 및 개정 실익,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첫째, 현행법상 직권면직사유가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장애인’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 등에서는 직권해임사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음¹⁾.

- 셋째, 제21대 국회에도 동일한 입법 취지에서 ‘심신상의 장애’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데,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은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②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현 수정으로 인한 혼란 소지 및 개정 실익 낮음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③ 그 외 다수 개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제21대 국회 ‘심신상의 장애’ 표현 수정 관련 개정안 심사 경과]

심사 경과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비고
① 개정 (원안의결)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0,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1호,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제6항제4호 - ‘ <u>심신장애</u>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 <u>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
② 법사위 계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24,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심사 내용(23. 5. 16.) - 유사 64개 법안 일괄 처리 필요, 오랜기간 사용된 ‘심신장애’ 표현 수정 시 혼란 소지 및 개정 실익 낮음 등을 사유로 법사위 계류

-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경과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비고
③ 임기 만료 폐기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8,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등 다수 법률안	-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와 건강 관련 민감정보를 포함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타인이 열람 또는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표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²⁾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 동일한 입법 취지에서 ‘심신상의 장애’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8호,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등이 문체위를 비롯한 다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또한, 동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 < 문체부 수정안 >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② (생략)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② (현행과 같음)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② (현행과 같음) 2.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호 제1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의결 또는 수정 여부 등은 상호간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겠음.

[‘심신상의 장애’ 표현 수정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소관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02)	최보윤의원 2025. 4. 21.	국방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03)	최보윤의원 2025. 4. 21.	법사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18)	최보윤의원 2025. 4. 22.	기재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19)	최보윤의원 2025. 4. 22.	교육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33)	최보윤의원 2025. 4. 22.	산자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65)	최보윤의원 2025. 4. 3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34)	최보윤의원 2025. 4. 22.	농해수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69)	최보윤의원 2025. 4. 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72)	최보윤의원 2025. 4. 3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부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35)	최보윤의원 2025. 4. 22.	정무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66)	최보윤의원 2025. 4. 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67)	최보윤의원 2025. 4. 30.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소관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36)	최보윤의원 2025. 4. 22.	국토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73)	최보윤의원 2025. 4. 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74)	최보윤의원 2025. 4. 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75)	최보윤의원 2025. 4. 3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37)	최보윤의원 2025. 4. 22.	과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61)	최보윤의원 2025. 4. 3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38)	최보윤의원 2025. 4. 22.	문체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57)	최보윤의원 2025. 4. 3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42)	최보윤의원 2025. 4. 22.	행안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58)	최보윤의원 2025. 4. 3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10043)	최보윤의원 2025. 4. 22.	환노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63)	최보윤의원 2025. 4. 30.	

문 의 처

02)6788-5375